

| | | | | |
|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| 규정 | 문서번호 | TWP-A702 | |
| | | 제정일자 | 2010. 03. 01. | |
| | 자체평가 규정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 |
| | | 개정번호 | 7 | 페이지 |

목 차

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부서 | 기획홍보처 | 제정일자 | 2010. 03. 01.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
| 구 분 | 작 성 | 검 토 | | | | | 승 인 |
|-----|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| | 교무처장 | 산학협력처장 | 취업지원처장 | 학생처장 | 사무처장 | 총 장 |
| 직 책 | 담당 | | | | | | |
| 서 명 | | | | | | | |
| 일 자 | | | | | | | |



규정

문서번호 TWP-A702

제정일자 2010. 03. 01.

자체평가 규정

개정일자 2018. 02. 19.

개정번호 7 페이지 2/5

개정이력

| 개정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내용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1 | 2010. 11. 10. | - 2차 개정 |
| 2 | 2014. 01. 21. | - 부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|
| 3 | 2015. 04. 27. | 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 |
| 4 | 2015. 07. 28. | - 제2조의1(자체평가 지표) 제정 - 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심의사항 개정 - 제8조(자체평가운영팀) 수행 기능 개정 |
| 5 | 2016. 02. 18. | - 제2조의1(자체평가 지표)전문삭제 |
| 6 | 2017. 02. 00 | - 자체평가는 정의 개정 - 자체평가의 평가 대상 제정 - 자체평가위원회 대상 개정 - 자체평가업무 담당부서 개정 |
| 7 | 2018. 02. 19. | -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→ 기획처, 입학관리센터 → 입학처 학생처/학생취업처 → 학생취업처 - 전공주임교수 → 학과장 변경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 | 규정 | | 문서번호 | TWP-A702 |
| | | | 제정일자 | 2010. 03. 01. |
| | 자체평가 규정 |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
| | | | 개정번호 | 7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체평가의 정의) 자체평가라 함은 객관성, 공정성,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교적 차원의 교육역량 및 대학경영 역량 등을 평가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17.02.28.>

제2조의1(자체평가 지표) [전문삭제 2016.02.18.]

제3조(평가영역) [전문삭제 2017.02.28.]

제3조의1(평가대상) ①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전문신설 2017.02.28.]

1. 대학발전계획의 성과지표
2.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와 관련한 사항
3. 대학의 경영역량 및 성과와 관련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평가지기)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는 2 년에 1 회 이상 실시 하되 평가 시기와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, 대학 경영품질 및 교육품질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<개정 2017.02.28.>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2. 자체평가 지표의 선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07.28>
3. 자체평가 지표 결과의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07.28>
4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 | 규정 | | 문서번호 | TWP-A702 |
| | | | 제정일자 | 2010. 03. 01. |
| | 자체평가 규정 |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
| | | | 개정번호 | 7 |

제7조(자체평가실) [전문삭제 2017.02.28.]

제7조의1(담당부서) 자체평가의 기획, 운영, 조정, 관리 등의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 [전문신설 2017.02.28.] <개정 2018.02.19.>

제8조(자체평가운영팀) ① 자체평가의 원활한 실무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운영팀(이하 “T/F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5.07.28., 2017.02.28.>

② T/F팀은 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며,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T/F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(삭제)<삭제 2015.07.28>

2. 자체평가 지표 개발<개정 2015.07.28>

3. 자체평가 결과 분석<개정 2015.07.28>

4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<개정 2015.07.28>

5.(삭제)<삭제 2015.07.28>

6.(삭제)<삭제 2015.07.28>

7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④ T/F팀은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전공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와 T/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기타)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| | | | | |
|---|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정</p> | | 문서번호 | TWP-A702 |
| | | | 제정일자 | 2010. 03. 01. |
|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체평가 규정</p> |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
| | | | 개정번호 | 7 |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